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검증방식 분석과 시사점

조미진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부연구위원 (mcho@kiep.go.kr, Tel: 3460-1152)

김민성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전문연구원 (mskim411@kiep.go.kr, Tel: 3460-1113)

차 례 ● ● ●

1. 서론
2.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비교
3. 미국, EU의 원산지 검증 운영 현황 및 사례
4. 시사점

주요 내용 ● ● ●

- ▶ 한·미, 한·EU FTA 발효가 가시화됨에 따라 미국, EU와의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그러나 FTA가 발효되어도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상대국의 엄격한 원산지 검증으로 인해 기업들이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을 전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
- ▶ 지난 2010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FTA에 대한 국내기업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내외 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한 준비 현황도 매우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상황은 아직까지 한국의 총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지나지 않고, 기발효 FTA 중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 국가가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지금까지 발효된 FTA와 달리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두 국가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하지 못하는 국내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 ▶ 기업들이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 정책과 더불어 기업들의 적극적인 FTA 활용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EU의 집중 검증이 예상되는 산업을 선별하여 관련 기업을 집중 관리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기업의 입장에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중요한 것이 원산지 규정 준수이고, 그 적용의 정확성 여부가 FTA를 통한 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만큼 각 협정별 원산지 제도에 대해 숙지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1. 서론

- 2011년 7월 발효되는 한·EU FTA와 조만간 비준 움직임이 본격화될 한·미 FTA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FTA를 통한 교역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 한·EU FTA가 발효되면 FTA를 통한 교역비중이 3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미국, EU 등과 같이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많은 국가와 FTA가 발효될 경우 특혜수혜의 폭이 넓어지는 반면, 이에 따른 원산지 충족 여부에 대한 조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미국, EU 측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검증 결과 원산지가 잘못 판정되었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면 FTA 특혜세율 적용 배제, 엄청난 금액의 사후 추징 및 상대국 거래처의 손해배상 청구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됨.
- FTA 체제하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중요한 것은 원산지 규정 준수이며, 그 적용의 정확성 여부가 FTA를 통한 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인이 되는 만큼 FTA 원산지 제도에 관련된 증명과 검증에 대한 기업들의 올바른 이해가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본고에서는 한·미, 한·EU FTA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절차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두 국가의 실제 원산지 검증 시스템의 운용 방식과 검증 사례를 살펴본 후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함.

2.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비교

가. 원산지 증명과 검증

- FTA를 통한 특혜관세 혜택을 역내국으로 한정시키기 위해 각 FTA에서는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해당 품목의 원산지 입증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음.
 -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각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명서를 상대국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수입 후 수입품의 원산지에 의문이 있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의 정확성과 수입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원산지 검증(verification)이 이루어짐.
- 각 FTA별로 원산지 검증방식은 협정 당사국의 지리적·역사적·정치적 상황 및 관세제도와 검증의 효율성,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주로 미국, 캐나다, 칠레 등 미주권 국가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유럽 지역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¹⁾

- 직접검증은 수입체약국 세관당국이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현지조사를 통해 원산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임.
- 간접검증은 수출국의 세관당국에 검증을 위탁하는 방법인데, 검증을 요청받은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입국 세관당국에 검증결과를 통보하는 기간은 각 협정별로 상이함.

■ 한편 미주권 국가와 유럽 국가가 채택하는 원산지 검증방식이 서로 다른 것은 이들 국가가 채택한 원산지 증명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됨.

- 원산지 증명방식에는 수출자, 생산자 혹은 수입자가 아닌 제3자(정부기관이나 상공회의소 등)에 원산지 입증을 요구하는 ‘기관발급제도’와 수출자, 생산자 혹은 수입자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물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자율발급방식’이 있음.
- 미주권 국가와 유럽 국가가 채택한 원산지 증명방식은 자율발급방식이나 유럽 국가에서는 증명 주체를 ‘인증수출자(approved exporter)’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증명제도는 EU·멕시코, EU·남아프리카, EFTA·멕시코, 한·EFTA, 한·EU FTA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수출하고 협정 및 법제도와 제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법규 준수도가 우수한 수출자를 인증수출자로 등록하여 그 인증수출자가 스스로 원산지를 증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상기 FTA에서 모두 세관당국이나 기타 권한이 있는 기관에 대해 서류의 진실성과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문검증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반면 NAFTA, 캐나다·이스라엘, 미·칠레, 한·칠레 FTA 등에서는 수출자(생산자 포함)가 자기 이름으로 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출자는 원산지 관련 전문가가 아니고 인증수출자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정된 것이 아니므로 이들이 제출한 정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방문검증을 포함한 직접검증 방식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임.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산지 증명서의 신뢰도는 원산지 증명방식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이러한 관계는 원산지 검증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원산지 증명과 검증 방식은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음 절에서는 미국과 EU의 실질적인 원산지 검증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한·미, 한·EU FTA에 규정된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방식을 비교해보고자 함.

나.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증명 및 검증 비교

■ 한·미 FTA와 한·EU FTA의 원산지 증명방식은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증명주체, 증명서 서식, 유효기간 등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음.

1)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남풍우 2011) 참고.

- 한·미 FTA의 경우 여타 협정과 달리 수출자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는 지정된 서식 없이 필수사항만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 원산지 증명서는 4년간 유효함.
 - o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필수사항으로는 증명인의 성명(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상품의 수입자(이는 경우에 한함),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함), 상품의 생산자(이는 경우에 한함), HS 품목 분류와 품명,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 증명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 동일상품의 복수 선적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등이 있으나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는 않음.
- 반면 한·EU FTA에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인증수출자나 6천 유로 미만의 상품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신고서 (Invoice Declaration)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송품장신고서는 12개월간 유효함.
 - o 우리나라의 인증수출자는 인증 받은 협정의 HS 6단위 품목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한 품목별 인증수출자와 모든 협정과 모든 품목에 대해 적용 가능한 업체별 인증수출자로 구분되며, 인증기관은 세관으로, 품목별 인증수출자와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임.
 - o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은 ①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HS 6단위 기준)으로, ② 원산지 증명서 작성 대장을 비치관리하고, ③ 원산지 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 전문가 포함)를 지정운영하고, ④ 최근 2년간 원산지 검증 관련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⑤ 최근 5년간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임.
 - o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②~⑤에 해당하는 인증 요건 외에 (i)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한 전산처리 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원산지 증명 능력을 보유하고, (ii) 최근 2년간 법 및 관세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iii)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iv) 최근 2년간 5회 이상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이 반려된 사실(보정)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됨.

표 1. 한·미, 한·EU FTA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증명방식	증명주체	증명서 서식	유효기간
한·미 FTA	자율증명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무형식 (필수사항만 기재)	4년
한·EU FTA	자율증명	수출자	인보이스 방식	12개월

자료: 협정문에 기초하여 작성.

- 한·미 FTA와 한·EU FTA의 각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검증방식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임.
 - 한·미 FTA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섬유·의류의 경우 수출국이 검증을 실시하되 검증과정에서 수입국이 수출 당국과 함께 관련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수출국의 검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o 섬유·의류 분야의 검증은 수입국이 수입된 섬유·의류 상품의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국의 요청이나 수출국 자체 발의에 의해 검증이 수행됨.
 - o 또한 섬유·의류 분야의 현지방문조사는 증거 인멸이나 변경의 위험으로 인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방문 시점에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허락을 구하며 수출국은 결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 및 검증결과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검증을 요청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수입국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반면 한EU FTA에서는 무작위 또는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조사과정에 수입국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함.
- o 한·EU FTA에서는 별도의 세관분야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의정서(Protocol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를 두어 수출국의 동의하에 수입국도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함.

표 2. 한·미, 한EU FTA 원산지 검증방식 비교

	검증방법	검증주체
한미 FTA	직접검증(섬유·의류는 간접검증)	수입국(섬유·의류는 수출국)
한EU FTA	간접검증(수입국 참관)	수출국(수입국 참관)

자료: 협정문에 기초하여 작성.

- 한편 상기의 FTA에서 모두 원산지 검증과 관련해서 생산자 또는 수출자,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서류를 협정에서 명시된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미 FTA에서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 수입자 모두 5년 이상, 한EU FTA의 경우 수출자 혹은 생산자는 5년이지만 수입자는 수입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수입 관련 기록을 보관하도록 정하고 있음.

3. 미국, EU의 원산지 검증 운영 현황 및 사례

가. 미국

1) 미국의 원산지 검증절차²⁾

- 미국의 원산지 검증대상은 미 세관의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시스템에 따라 세수 손실이 크고 미국 경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선정된 PTI(Priority Trade Issues)로 자동차, 섬유·의류, 철강, 전자, 농산물 등이 여기에 해당함.
- 특히 NAFTA 발효 초기 미 관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는 FTA 발효에 따른 혜택이 큰 자동차 산업과 섬유 산업에 대한 원산지 검증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특히 섬유산업의 경우 CBP가 징수한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미 세관은 조사대상자를 선별한 이후 원산지 검증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 자재명세서, 원산지 결정방법 등에 대한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세관 수입담당자가 직접 수출입자를 방문하기도 함.

2) 미국의 원산지 검증절차는 NAFTA에 기초하여 기술하였음.

- 세관 수입담당자의 현지방문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 전문가 검증팀이 구성되어 현장실사가 진행됨.
- 서면검증은 60일, 현장실사는 2~3주 동안 이루어지며, 수입품의 원산지 규정 충족 여부에 대한 검증결과 통보 절차를 포함하여 미 세관의 검증절차는 약 7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 미 세관의 원산지 검증 개요

단계	세부사항
검증 목적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 방지로 세수 확보, 부정경쟁 방지, 국내산업 보호 등
검증대상	위험분야로 집중 관리 중인 PTT 관련 산업 위주로 선정되며, 자동차, 섬유·의류, 철강, 전자 등이 해당함
검증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 원산지 증명서 제출 요구 - 2단계 자재명세서(BOM),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결정방법 제출 요구 - 3단계 수입담당자의 수출입자 현장방문 - 4단계 검증팀에 의한 수출입 현장실사 ※ 1~3단계는 일선 세관(port of entry)에서, 4단계는 9개의 본부 세관에서 담당하며, 검증팀은 검증 대상 회사 규모에 따라 구성되나 일반적으로 심사, 수입, 전산 전문가 등 2~4명으로 구성됨
검증과정의 목표	검증과정에서 불충분 공정, 직접운송의 원칙, 세번변경, 부가가치 산출, 수입관세 적용 등이 원산지 규정에 맞게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함
검증기간	서면 60일, 현장실사 2~3주, 종합심사 7개월

자료: 관세청(2010)과 미 관세청(CBP) 자료를 토대로 작성.

■ 서면조사 과정에서 미 세관이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서면질의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조사대상 수출자나 생산자는 통보된 날부터 30일 안에 이에 답변해야 함.

- 생산자나 수출자가 송부된 서면질의서와 증빙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미 세관은 증빙서류 요청과 함께 서면질의서를 재송부하고 30일 안에 답변이 없을 경우 특혜관세 부여를 중단할 수 있음.
- 일례로 NAFTA의 원산지 검증 서면질의서(CBP Form 446)는 생산과정, 비원산지 재료 및 부품, 원산지 재료 및 부품, 추가적 질문, 보증 등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 재료에 대한 증빙자료, 부가가치 산출방법, 공급자 리스트 등의 자료가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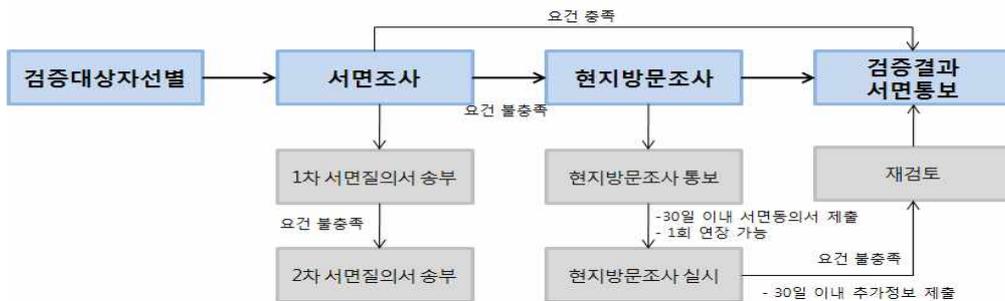
표 4. NAFTA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질의서(CBP Form 446)의 구성

분류	세부항목
I. 생산과정	검증받을 제품 또는 재료의 생산과정에 대해 기재
II. 비원산지 재료 및 부품	비원산지 재료 또는 부품 및 HS 코드 기재(HS 6단위 혹은 필요한 경우 HS 8단위)
III. 원산지 재료 및 부품	원산지 재료 및 부품, 원산지 증명서, 진술서 등 증빙 자료의 유형, 공급자 또는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
IV. 추가 질문	부품 및 재료의 세번분류, 미소기준 적용여부, 원산지 대체가능 재료의 사용 여부 및 판정방법, 부가가치(RVC) 기준 및 산출방법, RVC 누적기준의 적용 여부와 적용 시 공급자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
V. 보증	동 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성과 사실성을 보증하고 허위나 관련 정보 누락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서명하고 직위, 회사 이름, 연락처, 날짜 등을 기재

자료: 미 관세청(CBP).

- 서면조사 결과가 불충분한 경우 현지방문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미 세관은 사전에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국 세관 등에 현지방문 조사의 취지에 대해 서면 통보를 하고 해당 수출자나 생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에 대한 서면동의서를 회신해야 함.
 - 다만 조사대상 수출자와 생산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는 1회에 한하여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지방문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현지방문조사에서는 회사관계자 인터뷰, 회계구매재고관리시스템 심사, 역내부가가치(RVC) 등에 대한 질의서와 서류의 일치 여부, 공급자 확인서 등의 자료 보관장소 확인, 재료 공급자에 대한 심사 수행 등 원산지 결정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집중검증을 실시함³⁾
 - 일례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정부는 NAFTA 체제하에서 통일되고 일관된 원산지 검증절차의 적용을 위해 NAFTA 검증 매뉴얼(NAFTA Audit(Verification) Manual)을 작성하고 유사한 검증 시스템을 개발함.
 - NAFTA 검증 매뉴얼은 각국의 검증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지방문조사에 중점을 두어 검증단계별 목표 및 절차, 권고하는 검증 프로그램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음.
- 미 세관은 검증 종료 후 60일 안에 검증대상 수출자와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검증결과를 통보해야 하는데, 최종 서면결정서를 통보하기 전에 검증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생산자와 수출자는 30일 안에 이에 대한 자료 보완 및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새롭게 추가된 정보를 바탕으로 미 세관은 재검토 작업을 거쳐 검증결과에 대해 최종 서면통보를 함.

그림 1. NAFTA의 원산지 검증절차



자료: 19 CFR, 181.71-76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검증 사례

- 미국 FTA 원산지 검증의 대표적인 사례로 포드(Ford)사를 들 수 있는데, 포드사는 멕시코에서 수천 개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NA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자료보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미 세관에게서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음.⁴⁾
 - 포드사는 멕시코에 소재한 자회사(Codlisa)로부터 수천 개의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NA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음.

3) 관세청 내부자료(2010).

4) Julius Melnitzer(2007), Ford Loses NAFTA Record-keeping Case.

- 미 세관은 2001년 포드사에 수입제품의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포드사는 요청 자료가 수출자만 보관해도 되는 자료라고 주장하며 서류 제출을 거부함.
- 미 세관은 작성자와 관계없이 원산지 증명서를 증빙하는 모든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알리고 포드사에 4,1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이 밖에 트리운포 맥스(Triunfo-Mex)사의 수입제품 가격 허위 신고, 파이오니어(Pioneer)사의 원산지 허위신고 및 자료보관의 의무 위반 등의 사례가 있음.

- 트리운포 맥스사는 연유와 인스턴트 드링크 믹스(Instant Drink Mix) 등을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기업으로 NAFTA하에 쿼터제를 적용받는 특정 품목을 쿼터 소진 후 수입할 때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관련 제품의 가격을 종전 신고 가격의 1/10 수준으로 낮추어 신고하여 관세를 탈세한 것이 밝혀짐.
- 이에 트리운포 맥스사는 350만 달러의 탈루 관세와 더불어 21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고 관련자들은 최대 2년 형 선고 및 2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음.⁵⁾
- 파이오니어사는 멕시코에서 스피커를 수입하면서 NA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미 세관의 조사 결과 수입 스피커가 제3국에서 만들어진 부품을 멕시코에서 조립한 것으로, 이는 NAFTA의 원산지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원산지 허위신고와 더불어 관련 자료 보관의 의무를 위반하여 미 세관에게서 1천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음.⁶⁾

나. EU

1) EU의 원산지 검증절차

■ EU는 미국과 달리 다수의 FTA에서 간접검증 방식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별도의 상호지원의정서(Protocol on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를 규정하여 필요할 경우 수입국도 조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한·EU FTA를 비롯하여 EU-칠레 FTA, EU-남아공 TDCA, 유로-지중해 협력협정(Euro-Mediterranean Association Agreement) 등에서는 수입국이 무작위나 원산지 증빙자료의 진정성, 관련 제품의 원산지 지위 등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reasonable doubts)이 들 경우 수출국에 검증을 요청하고, 검증을 요청받은 수출국은 요청받은 날부터 10개월 이내 검증결과에 대해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EU의 원산지 검증은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시행되나 EU 공동체 전체의 재정적 이익에 반하는 위법행위, 관세법이나 농업법을 위반한 명백한 정보가 있을 경우 공동체 차원에서 실시되기도 함.

- 공동체 차원의 원산지 검증은 EU 집행위원회 산하의 부정부패 감독기구인 OLAF(European Anti-Fraud

5) Gardner Carton&Douglas(2005), Government Agencies "Crack Down" on Trade Violations.

6) Lawrence Friedman(2006), More NAFTA Penalty Action

Office)⁷⁾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OLAF는 EU 개별 회원국을 대표하여 수출국에 사후검증을 요청하거나 협정 국가의 현지방문조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

- 2006년 이후 최근까지 OLAF 차원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에 83차례 이상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한 바 있으며, 245건의 원산지 조사 결과 220건이 중국산으로 판명됨.⁸⁾

■ OLAF의 조사절차는 정보 평가(assessment), 조사 및 운영(investigations and operations), 조사 종료(closing a case) 세 단계로 구분됨.

- 집행부(Executive Board)는 위법행위, 사기, 부정부패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출처를 통해 입수된 정보를 OLAF의 권한 여부, 정보의 신뢰성, 혐의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함.
 - o 평가기간 단축을 위해 초기 입수된 정보는 사전검토를 받게 되는데, 검토결과 해당정보가 명백하게 OLAF의 권한을 벗어날 경우 증거가 불확실한 사건(Prima facie non-case)으로 분류되어 평가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됨.
 - o 원산지 검증과 관련 있는 관세법 위반행위는 제3국과 맺은 세관 협력 및 상호지원 협정이나 통관분야의 상호 지원 의정서 등에 기초하여 제3국으로부터 정보 교환과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⁹⁾
-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보 수집, 관련 문서 검토, 현장조사 및 관련자 인터뷰 등을 통해 공식적인 조사활동을 실행함.
 - o 공식적으로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 특성에 따라 조사유형과 진행방식이 결정되는데, 농업과 통관 분야의 위법행위는 상호지원요청 사건(mutual assistance message cases)으로 분류되어 회원국의 요청에 따라서 또는 OLAF 자발적으로 회원국이나 제3국에 공식적인 지원을 요청함.
 - o 요청에 대한 답변이 회신되면 OLAF는 이를 평가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한 예방조치나 구제조치를 위해 회원국이나 제3국 등에 회신된 답변을 송부함.
- 조사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된 사건은 모니터링(monitoring action)을 하거나 비사건(non-cases)으로 분류되어 더 이상의 조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음.

표 5. OLAF의 조사 개요

단계	세부 사항
평가	- 유럽 공동체 기관, EU 회원국, 제3국, 국제기구, 목격자, 내부 고발자, 익명의 정보 제공자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 - 집행부(executive board)는 입수된 정보에 대해 OLAF의 권한 여부, 정보의 신뢰성, 혐의의 심각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조사 및 운영	- 평가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 - 조사활동은 EU의 재정적 이익에 반하는 사기, 부정부패, 위법 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하며, OLAF 조사 담당자는 정보 수집, 관련 문서 검토, 현장조사 및 관련자 인터뷰 등에 착수
조사 종료	- 조사결과 및 결론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집행부에 제출 - 사건 종료 후 OLAF 단체장(Director-General)의 승인하에 관련 EU 기관, 개별 회원국 등에 최종보고서와 수사 관련 기타 문서를 전달 - 종료된 사건이라도 조사결과를 반증하는 새로운 증거자료가 존재할 경우 재조사도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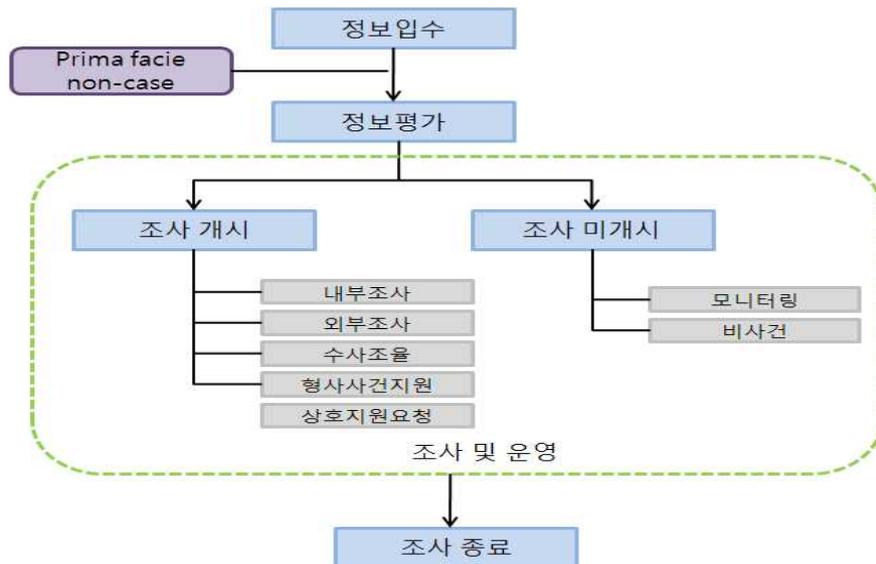
자료: OLAF Manual - Operational Procedures에 기초하여 작성.

7) OLAF는 1999년 설립되어 사기행위, 부정부패, EU의 재정적 이익에 반하는 기타 위법행위에 대해 EU 공동체 차원의 조사나 개별 회원국의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8) 「한국 원산지검증사례 및 시사점」 관세청 세미나 발표자료(김석오 2010).

9) EU는 현재 한국, 중국,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58개 국가와 세관 분야의 상호지원 협정 또는 의정서를 맺고 있음.

그림 2. OLAF의 조사 절차



자료: 저자 작성.

- 사건조사 종료 후 조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final case report)를 집행부에 제출하고, OLAF 단체장(Director-General)의 승인하에 관련 EU 기관, 회원국 등에 조사결과를 통보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OLAF에 입수된 정보 중 통관 관련 정보는 271건으로 전체 입수 정보(4,500건)의 6.0%에 불과하나 평가절차를 거쳐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121건으로 통관 관련 입수된 정보의 46.9%에 달함.

- 또한 EU 집행위의 주세입원이 각 회원국 관세 세수의 75%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통관 관련 검증이 매우 활발히 진행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음.¹⁰⁾

- 통관 분야의 위법행위 중 원산지 허위신고에 대한 것이 가장 많으며, 기타 사기행위, 상품에 대한 허위기재 순인 것으로 나타남.¹¹⁾

표 6. 통관 분야에 대한 OLAF의 입수 정보 및 조사개시 현황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비중
입수된 정보	통관	60	65	56	54	36	271	6.0%
	전체	802	822	878	1029	969	4,500	100.0%
조사개시 결정	통관	22	24	30	23	22	121	11.6%
	전체	215	195	210	204	220	1,044	100.0%

자료: OLAF Annual Report 2006-2010을 바탕으로 작성.

10) 「한국 원산지검증사례 및 시사점」 관세청 세미나 발표자료(김석오 2010).

11) OLAF Annual Report 2006-2008의 내용 참고.

2) 검증 사례

- OLAF는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원산지 허위신고를 적발하고 3천만 유로의 탈루 관세를 회수함.
 - 2004년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쿼터제 폐지 후 값싼 중국산 제품이 EU 시장을 범람하자 2005년에 쿼터제도가 다시 도입됨.
 - 이에 수출업자들이 중국산 섬유제품의 원산지를 방글라데시로 허위 신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어 OLAF는 방글라데시 정부와 함께 수십만 건의 원산지 증명서를 조사함.
 - 조사 결과 대부분의 원산지 증명서가 허위로 판정되었고, 수백 명의 EU 수입업자들이 개입된 사실이 적발됨.

- GSP 특혜 대상국인 오만에서 수입되는 일부 수산물의 원산지가 허위 신고된 것으로 조사되어 100만 유로 이상의 탈루 관세에 대한 추징 절차가 진행 중임.
 - 오만에서 수입되는 일부 수산물의 원산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OLAF는 오만 정부의 협조하에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조사 결과 대다수 제품의 원산지가 허위 신고된 것으로 밝혀짐.
 - 원산지 허위신고의 주요 원인은 수출자의 부정확한 세관신고였으며, 일부는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기도 함.
 - OLAF와 관련 회원국은 탈루된 100만 유로의 관세 추징과 EU 내 수입자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임.

- 아시아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컬러 TV의 원산지 허위신고가 적발되어 1,800만 유로의 탈루 관세를 추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됨.
 - 2001년 아시아 2개국에서 수입되는 컬러 TV의 원산지가 덤핑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제3국가로 허위 신고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OLAF는 자체조사에 착수하여 관련 회원국과 제3국가의 지원하에 현지방문조사를 수행함.
 - 조사 결과 컬러 TV의 원산지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밝혀져 1,800만 유로의 탈루 관세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됨.

4. 시사점

- 한·미, 한·EU FTA 발효가 가시화됨에 따라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과 동시에 미국, EU 측의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할 것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FTA 체제하에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중요한 것은 원산지 규정 준수인데, 그 적용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는 원산지 검증과정에서 원산지가 잘못 판정되거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경제적 손실을 크게 입을 수 있기 때문임.

- 앞서 미국, EU의 실질적인 원산지 검증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국내기업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음.
- 즉,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 차원에서 FTA 특혜관세 신청 품목과 관련하여 원산지 확인을 위해 제공한 서류,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원재료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원가계산서, 원재료 출납 및 재료관리 대장 등을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2010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국내기업의 FTA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FTA 특혜관세 신청과 관련하여 원산지 입증 관련 서류 보관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 기업이 소수에 지나지 않아 국내외 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한 국내기업의 준비현황이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¹²⁾
- 이는 아직까지 한국의 총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이고, 기발효 FTA 중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 국가가 없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2006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FTA 체결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은 스위스, 태국, 베트남, 칠레 등이 요청한 약 45건뿐이고, 품목별로는 섬유·의류, 신발, 기계·전자, 석유화학·플라스틱 등 FTA 특혜관세 혜택이 큰 품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남.
- 그렇지만 한·미, 한·EU FTA가 발효되면 지금까지 발효된 FTA와 달리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음.
- 기업들이 한·미, 한·EU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기업의 적극적인 FTA 활용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 정부 차원에서는 미국, EU의 집중검증이 예상되는 산업을 선별하여 관련 기업들을 집중 관리하고,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 마련이 요구됨.
- 섬유산업의 경우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 관세청이 한국을 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할 예정¹³⁾이어서 미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해 우리 기업이 대응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한편 한·EU FTA의 경우 기본적으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아야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호응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FTA 발효 초기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이 요구됨.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동아시아 FTA에 대비한 한국 원산지규정 추진 방안(조미진 외, 2010)」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이며, 1,500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일본과의 FTA에 대비한 적합한 원산지 결정기준 및 FTA 활용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식 및 관심 정도를 파악함. 총 456개의 응답기업 중 36.6%에 달하는 169개 기업만이 FTA 특혜세율 신청에 따른 원산지 입증 관련 서류보관의 의무를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13) 미 관세청은 연간 약 5천 건의 집중검증(intensive verification)을 실시하고 있음. 미국 내 항만에서 근무하는 수입통관 전문가(import specialist) 900여 명 중 1/3 이상이 섬유수입 업무를 담당하고, 500여 명의 회계감사관이 연간 약 60건의 섬유 관련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등 섬유산업에 대한 검증을 강조하고 있음(국제 원산지 컨퍼런스 발표자료, 2011. 6).

- 2011년 5월 기준 인증대상기업 8,206개 중 '폐업' 또는 '관세혜택' 이 미미하여 FTA 활용을 포기한 업체를 제외한 실질 인증대상기업 4,333개 중 1,049개 기업만이 인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나 인증실적이 다소 저조한 상황임.

■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노력해야 함.¹⁴⁾

- 수출자(생산자 포함)의 경우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협정별로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부합하는 생산 및 투자 패턴을 유지해야 하며, 향후 세관의 사후검증에 대비해 입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해야 함. 또한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지정을 조속히 받아야 함.
- 원산지 입증 책임은 1차적으로 수입자에게 있기 때문에 수입 시 FTA 체결대상국과의 거래 여부, 특혜관세 대상품목 여부,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및 원산지 증명서 구비서류 등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고, 수출 기업의 원산지 관리 능력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KIEP**

14) 남풍우(2010), 「자유무역협정(FTA)하에서 원산지검증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관세학회.